

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(아종 포함)의 수입·반입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고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:)	
대상 천연기념물	명칭	
수입·반입 목적		
수출(반출) 국가		원산지
수입 통관일		
동물 기본정보	보통명	학명
	성별	나이
	크기 * 길이, 무게 등	
	인식표(가락지 등) 번호 *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.	
보관(사육) 장소		

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(아종 포함)의 수입·반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수입·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원산지 증명서 1부 3. 해당 동물의 사진(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 1부,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,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를 말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처리절차

